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보호 의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사실조사 자료제출 명령 등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 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법률 제18451호, '21.9.14.), 제51조의2, 제104조 제1항(법률 제18477호, '21.10.19.)이 개정됨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의무에 관한 사항,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관련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기준 및 이행강제금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 부과(안 제30조의9 신설)

-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시 이용자 보호 규정 등 세부사항 마련

나.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 마련(안 제30조의10 신설)

-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보호 목적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이용자보호업무평가 규정을 준용, 조사대상·내용을 선정하고 부가통신 등 기존 실태조사의 방법·절차를 고려하여 규정

다. 자료제출 불이행 이행강제금 제도 등 신설(안 제43조의2, [별표7의2]

신설 및 [별표11] 개정)

- 사실조사 시 자료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하루 평균매출액 산정기준 등 마련
- 대기업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금지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등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

라. 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 등 신설 금지행위 유형·기준 마련(안 제42조 제1항, [별표4] 개정)

- 규제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

마. 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안 제46조제1항 관련 [별표6] 개정)

- 기존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인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 마련

4. 주요토의과제

해당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안 제30조의10(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신설 관련
예산 협의 중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9, 제30조의10 및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①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로 인한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약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이용자의 청약 전에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상호·연락처, 모바일콘텐츠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이용요금,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이용계약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에 관한 사항

2.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② 앱 마켓사업자는 이용약관 중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 시행일 30일 전에 변경사실 및 변경되는 이용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 마켓 접속화면(또는 접속화면과의 연결화면)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변경되는 이용약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 등을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앱 마켓사업자는 앱 마켓을 통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

과정에서 이용자의 불만을 접수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전달하고 그 처리결과를 전달받으면 해당 이용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앱 마켓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바일콘텐츠 등 결제에 관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이용기간, 정기결제 여부, 환불정책 등 중요한 사항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할 것
2.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 및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할 것
3.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을 철회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용계약 체결과 비교하여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4. 정당한 사유 없이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의 철회 또는 해지를 제한하지 않을 것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해 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앱 마켓사업자에게 제1항부터 제4항의 조치를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의10(앱 마켓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른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앱 마켓 매출액, 이용자 규모
2. 이용자(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포함한다) 불만의 발생 정도
3.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 위반,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등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발생 정도

②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
2. 이용자 수, 모바일콘텐츠 등 등록 건수, 거래 건수, 거래액 등 앱 마켓서비스 제공·이용 현황
3. 결제액, 결제수수료 등 결제서비스 제공·이용 현황
4.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5. 이용자 불만 접수내역, 처리체계, 처리실적 등 이용자 보호 조치 현황
6.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른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보호 및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관련 사항
7. 그 밖에 앱 마켓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 내용·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시 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일수 [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으로 하루 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 ②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때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하루당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행행위를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의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1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재제출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고서도 재제출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강제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이행강제금 및 법 제51조의2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이행강제금의 독촉절차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과징금”은 “체납된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⑨ 이행강제금 부과에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제1항의 [별표 4]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46조제1항의 [별표 6]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43조의2제2항의 [별표 7의2]를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66조의 [별표 11]를 별지 4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9 및 제32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2 및 별표 7의2·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 별지 1 >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설비등의 제공,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상호접속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이하 “상호접속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같거나 유사한 의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임차 및 접속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다. 상호접속등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상호접속등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 협정의 체결 또는 체결된 협정의 변경 등에 대하여 법 제35조제3항·제36조제2항·제37조제3항·제38조제4항·제39조제2항·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법 제35조제2항·제36조제1항·제37조제2항·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제41조제3항·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상호접속등에 관하여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

다. 삭제 <2016. 12. 30.>

3. 정보 등을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상호접속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기술, 회계 및 영업 관련 정보와 이용자의 이용실적 등 이용자 관련 정보 등을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로 한다.

4. 이용요금(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정리에 관한 사항 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회계를 정리하거나 비용·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나. 일정한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다른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2) 결합판매하면서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다른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거나, 다른 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이나 수익으로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서비스의 이용요금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금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다목에서 같다)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다.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제3자에게 수수료 및 결제 조건 등의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이나 수익을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상호접속등의 대가를 산정하는 행위

라. 삭제 <2016. 12. 30.>

5.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요금청구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 2) 요금 관련 프로그램의 조작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이용자(명의를 도용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2) 전기통신서비스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3) 법령이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약관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
- 6)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신청 후 개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전기통신서비스의 신청 철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7)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명의로 개통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8)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약관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약관을 해지하는 행위
- 9) 법 제36조에 따른 가입자선로가 설치되지 않거나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지역으로의 이사 등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이용약관 해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 10)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부과하거나 추가조건 등을 제안하는 등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
- 11) 이용자가 본인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조건 및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행위

다. 삭제 <2016. 12. 30.>

라. 이용자[명의를 도용(盜用)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로 처리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요금 연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관계 기관에 이용자의 요금 연체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요금연체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하지 않는 행위
- 2) 요금 연체정보 제공과 관련된 자료를 요금 연체정보 제공일부터 1년이 지난 날 또는 요금 연체정보 제공 사유의 해소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한 날까지

보관하지 않는 행위

- 3) 연체요금의 납부 등 요금채납의 원인이 소멸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요금 연체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행위

마.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 2) 장기이용 또는 다량이용 계약 체결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을 전환한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 가입을 전환하지 않기로 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4) 협정 등에 따라 이용자와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제공하여 이용자의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

바. 결합판매하여 특정 구성상품의 과도한 할인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경우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 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轉移) 등 공정경쟁 저해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사.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제3자에게 구내(構內)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의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
- 3) 삭제 <2019. 6. 11.>
- 4)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5) 부당하게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6)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

아. 삭제 <2016. 12. 30.>

5의2.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명, 이용요금, 지원금, 요금할인, 경품, 할부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개별 할인을 등의 약정 조건, 서비스 개시 전의 신청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 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 사실, 서비스 개시일 등을 고지하지 않는 행위
- 라. 약정기간 중에 이용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및 이용계약 해지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 마. 약정기간 중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 변경 사항을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 바.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약정기간 만료일, 약정기간 만료 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이후에 이용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지(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일부 해지를 포함한다) 시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 사실 등을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 사. 이용계약 해지 시 이용자에게 이용계약의 해지 접수 및 계약 해지 완료 사실 등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6.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를 결정·유지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상호접속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같거나 유사한 전기통신서비스의 공급원가, 요금 및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회피가능비용에 비추어 상호접속등의 이용대가를 높게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상호접속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효율성, 기술발전 추세 및 시장경쟁 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7.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이하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라 한다)에서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계약 내용과 다르게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금지행위에서 제외한다.

나.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같거나 유사한 콘텐츠의 일반적인 시장 거래가격에 비추어 부당하게 낮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높은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
- 2)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공동마케팅 비용분담, 무상 제공, 독점 제공 등 수익배분 관련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설정·변경함으로써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8.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제공사업자의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 등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나.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다.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라.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절차에 비하여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마.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결제방식에 따라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조건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바.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수수료, 앱 마켓 노출, 검색, 광고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앱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 등 앱마켓 운영 과정에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0. 앱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앱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거나 삭제에 준하는 정도로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접근을 부당하게 차단·제한하거나 모바일콘텐츠 등의 기능을 제한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별지 2 >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제1항 관련)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가.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행위: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나.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및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행위: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 (이하 “중대성의 정도”라 한다)에 따라 산정

2. 과징금의 산정절차 및 산정기준

가. 과징금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53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고려 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과징금을 산정한다.

나.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 사유

1) 기준금액 산정

가) 기준금액은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부과기준율은 법 제5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때에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의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 그 밖에 과거 실적, 사업계획,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다.

라)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8억원 이하의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2) 필수적 가중·감경

가) 기준금액에 법 제5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감경한 금액을 합산하되, 가중의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이 중 큰 금액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차등 가중하고,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반복되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비례하여 가중한다.

3) 추가적 가중·감경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에 법 제5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의 변화

등 위반행위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합산한다.

3. 세부 기준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의 각 단계별 세부 고려 사유와 가중·감경 비율에 대한 세부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별지 3 >

[별표 7의2 신설]

자료나 물건의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3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자료나 물건 제출 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 명령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하루당 부과금액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하루당 부과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하루 평균매출액	부과비율	하루당 부과금액
15억원 이하	2/1,000	하루 평균매출액 × 2/1,0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1,500	300만원 + 15억원 초과분 × 2/1,500
30억원 초과	2/2,000	500만원 + 30억원 초과분 × 2/2,000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200만원 이하

< 별지 4 >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자의 사업종류 및 규모,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위반의 정도 및 그 결과,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04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11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이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 제1호	350	700	1,000
나.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 제2호	350	700	1,000
다. 법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1항 제1호	1,500	3,000	5,000
라. 법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3항 제1호	700	1,400	2,000
마.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 제2호의2	350	700	1,000
바. 법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법 제104조제1항 제2호	1,500	3,000	5,000
사. 법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1항 제3호	1,500	3,000	5,000
아. 법 제2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3항 제1호의2	700	1,400	2,000
자. 법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 제2호의2	350	700	1,000
차. 법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3항 제1호의3	700	1,400	2,000

카. 법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 제3호	350	700	1,000
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 제4호	350	700	1,000
파.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 제4호의2	350	700	1,000
하. 법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 제4호의3	350	700	1,000
거.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 제4호의4	350	700	1,000
너.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3항 제2호	700	1,400	2,000
더. 법 제32조의8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 제4호의5	350	700	1,000
러. 법 제32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 제4호의6	350	700	1,000
머.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 제5호	350	700	1,000
버.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 기준, 그 밖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 제6호	350	700	1,000
서.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 제6호의2	350	700	1,000
어.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정 체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4항 제1호	500	1,000	1,500
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3항 제3호	700	1,400	2,000
처. 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 제7호	350	700	1,000
커. 법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한 경우	법 제104조제2항 제1호	1,000	2,000	3,000
터.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 제7호의2	350	700	1,000
퍼.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1,500	3,000	5,000
허.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전기통신사업자 법 제104조제1항제5호	5,000	5,000	5,000

	또는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법 제104조제5항제8호	350	700	1,000
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9호	350	700	1,000
노. 법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0호	350	700	1,000
도. 법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유(私有)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법 제104조제2항제2호	1,000	2,000	3,000
로. 법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법 제104조제2항제3호	1,000	2,000	3,000
모.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나 그 밖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의 제거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104조제2항제4호	1,000	2,000	3,000
보.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1호	350	700	1,000
소.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2호	350	700	1,000
오. 법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3호	350	700	1,000
조. 법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4호	350	700	1,000
초. 법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2항제5호	1,000	2,000	3,000
코. 법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5호	350	700	1,000
토. 법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4항제2호	500	1,000	1,500
포. 법 제8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104조제5항제16호	350	700	1,000

호.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만, 구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4조제5항 제17호	350	700	1,000
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가 법 제92조제1항제1호(법 제51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제1항제6호	5,000	5,000	5,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0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①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로 인한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약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u> <u>1.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이용자의 청약 전에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상호·연락처, 모바일콘텐츠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이용요금,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이용계약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에 관한 사항</u> <u>2.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u> <u>② 앱 마켓사업자는 이용약관 중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 시행일 30일 전에 변경사실 및 변경되는 이용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 마켓 접속화</u>

면(또는 접속화면과의 연결화면)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변경되는 이용약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 등을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앱 마켓사업자는 앱 마켓을 통하여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 과정에서 이용자의 불만을 접수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전달하고 그 처리결과를 전달받으면 해당 이용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앱 마켓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바일콘텐츠 등 결제에 관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이용기간, 정기결제 여부, 환불정책 등 중요한 사항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할 것

2.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 및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할 것

3.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을 철회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용계약 체결과 비교하여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4. 정당한 사유 없이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계약의 철회 또는 해지를 제한하지 않을 것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해 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앱마켓사업자에게 제1항부터 제4항의 조치를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의10(앱 마켓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 위원회는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른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 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앱 마켓 매출액, 이용자 규모

2. 이용자(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포함한다) 불만의 발생 정도

3.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 위반,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등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발생 정도

②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

2. 이용자 수, 모바일콘텐츠 등 등록 건수, 거래 건수, 거래액 등 앱 마켓서비스 제공·이용

현황

3. 결제액, 결제수수료 등 결제 서비스 제공·이용 현황

4.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5. 이용자 불만 접수내역, 처리 체계, 처리실적 등 이용자 보호 조치 현황

6.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른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보호 및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관련 사항

7. 그 밖에 앱 마켓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대상자, 대상자 선정 기준, 내용·방법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

여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5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매출액”이란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시 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으로 하루 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②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때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징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행강제금
을 부과하는 때에는 하루당 이
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
기의 방법 및 기관 등을 구체
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
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행행위
를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
행강제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의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
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
부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1조
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재제출명령에
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30
일을 경과하고서도 재제출명령

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이행강제금 및 법 제51조의 2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이행강제금의 독촉절차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과징금”은 “체납된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⑨ 이행강제금 부과에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별지 1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 7. (생략) <u><신 설></u>	[별표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42조제1항 관련) 1. ~ 7. (현행과 같음) 8. <u>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u> <u>법 제5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u> <u>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제공사업자의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 · 갱신 · 점검 등을 거부 · 지연 · 제한하거나 삭제 · 차단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u> <u>나.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을 거부 · 지연 · 정지 · 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u>

다.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라.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절차에 비하여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마.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결제방식에 따라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조건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바.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수수료, 앱 마켓 노출, 검색, 광고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

· 점검 등 앱 마켓 운영 과정에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법 제5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거나 삭제에 준하는 정도로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접근을 부당하게 차단·제한하거나 모바일콘텐츠 등의 기능을 제한하는 행위로 한다. 이 경우 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별지 2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 제1항 관련)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가.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u>제7호에 따른 행위</u>: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나.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및 <u>제8호에 따른 행위</u>: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46조 제1항 관련)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가.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u>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행위</u>: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나. 법 제50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및 <u>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행위</u>: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별표7의2] 자료나 물건의 재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3조의2제2항 관련) <u>1. 일반기준</u> <u>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자료나 물건 제출 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 명령 불이행의 정도·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하루당 부과금액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하루당 부과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u> <u>2. 개별기준</u> <table><tr><th>하루 평균매출액</th><th>부과비율</th><th>하루당 부과금액</th></tr><tr><td>15억원 이하</td><td>2/1,000</td><td>하루 평균매출액 × 2/1,000</td></tr><tr><td>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td><td>2/1,500</td><td>300만원 + 15억원 초과분 × 2/1,500</td></tr><tr><td>30억원 초과</td><td>2/2,000</td><td>500만원 + 30억원 초과분 × 2/2,000</td></tr><tr><td>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td><td>-</td><td>200만원 이하</td></tr></table>	하루 평균매출액	부과비율	하루당 부과금액	15억원 이하	2/1,000	하루 평균매출액 × 2/1,0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1,500	300만원 + 15억원 초과분 × 2/1,500	30억원 초과	2/2,000	500만원 + 30억원 초과분 × 2/2,000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200만원 이하
하루 평균매출액	부과비율	하루당 부과금액														
15억원 이하	2/1,000	하루 평균매출액 × 2/1,0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1,500	300만원 + 15억원 초과분 × 2/1,500														
30억원 초과	2/2,000	500만원 + 30억원 초과분 × 2/2,000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200만원 이하														

< 별지 4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6조 관련)					[별표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6조 관련)						
1. 일반기준 (생략)					1. 일반기준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허. 법 제51조 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신 설>				허. 법 제51조 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04조 제1항 제5호	5,000	5,000	5,000
<신 설>		법 제104조 제5항 제8호	350	700	1,000	2)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법 제104조 제5항 제8호	350	700	1,000
호. 법 제9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단서 <신설>)		법 제104조 제5항 제17호	350	700	1,000	호. 법 제9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만, 구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04조 제5항 제17호	350	700	1,000
<신 설>						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가 법 제92조 제1항 제1호(법 제51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4조 제1항 제6호	5,000	5,000	5,000